

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 본 회의 (2021.4.12.)

# 조 례 안 심사 보고서



거창군의회  
의회운영위원회

# 목 차

- 1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.. 1

거창군의회 청소년의회체험활동  
운영에 관한 조례안  
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. 3. 30.

나. 발 의 자 : 권순모외 10명

다. 상정일자 :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
(2021. 4. 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의회 의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3)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계획(안 제4조)
- 4)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선정 및 활동지원(안 제5조 및 제6조)
- 5) 협력 및 우수 체험수가제안 선정 등(안 제7조 및 제8조)
- 6)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보상(안 제9조)
- 7) 표창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청소년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인구교육과
- 라. 기타사항
  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 - 2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1. 3. 29. ~ 4. 5.
    - 나) 예고결과 :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 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이며,
- 『청소년기본법 제5조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에는 “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되어 있어,
- 청소년관련 지방정책을 수립하는 지방의회에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성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정책수립 과정과 정책참여도, 의견수렴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임.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